

의안번호	2206441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4. 12. 20.
추 계 번호	24B586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3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¹⁾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 어업재해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²⁾의 한 유형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것임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3호(정의)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

2)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어업재해의 정의를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로 확대하는 경우(안 제2조제3호), 현행법의 재해대책 비용 보조 및 지원, 조세감면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또는 수입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표 2] 현행법 상 재해대책 지원 조문

구분	조문
추가재정소요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재해대책을 마련한다.</u>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u>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u>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구분	조문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당한 보상</u>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당한 보상</u>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수입감소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u>조세 감면</u> 등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u>건강보험료 감면</u>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정리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³⁾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업·수산업의 피해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재해대책 지원비용 등 추가재정 소요 및 조세감면 등 수입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참고자료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진행경과,
[참고자료 2] 해양방사능 조사결과,
[참고자료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및 대응 사업 예결산 현황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진행경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4. 12. 17. 기준)

연월	진행 경과
2011.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3.11)
2013.7	오염수 해양유출 공식 시인
2015.5	日 정부, 우리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WTO 제소
2018.10	日 정부, '오염수 해양배출 용인' 시사
2021.4	日 정부, 오염수 해양배출 방침 공표
2021.7	IAEA 모니터링TF 구성
2021.8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
2021.11	도쿄전력, 해양배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발표
2021.12	도쿄전력, 해양배출 실시계획 日 원자력규제위에 제출
2022.2	IAEA 모니터링TF 1차 방일
2022.3	IAEA 모니터링TF 2차 방일
2022.4	IAEA 모니터링TF 1차 방일보고서 발표
2022.5	日 원자력규제위, 실시계획 심사결과(초안) 발표
2022.6	IAEA 모니터링TF 2차 방일보고서 발표
2022.7	日 원자력규제위,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안 인가(7.22)
2022.8	방출시설 공사 착수
2022.11	IAEA 모니터링TF 3차 방일
2023.1	IAEA 모니터링TF 4차 방일
2023.2	日 원자력 규제위(NRA),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실시계획 수정본 심사서(안) 인가(2.22)
2023.4	IAEA 모니터링TF 3차 방일보고서 발표(4.6)
2023.5	IAEA 모니터링TF 4차 방일보고서 발표(5.4) IAEA 확증 모니터링(1차 시료 분석결과) 보고서 발표(5.31)
2023.6	도쿄전력, 설비공사 및 시운전('23.6.12~27) 日 원자력 규제위(NRA), 배출설비 사용전검사 종료(6.30)
2023.7	IAEA, 종합보고서 홈페이지 공표('23.7.4) 日 NRA, 해양배출설비 사용전검사 종료증 도쿄전력에 교부('23.7.7)
2023.8~ 2024.12	日 정부, 오염수 방류 발표('23.8.22) * '24년 11월까지 총 10차 방류 ● 1차 방류('23.08.24~'23.09.11) ● 2차 방류('23.10.05~'23.10.23) ● 3차 방류('23.11.02~'23.11.20) ● 4차 방류('24.02.28~'24.03.17) ● 5차 방류('24.04.19~'24.05.07) ● 6차 방류('24.05.17~'24.06.04) ● 7차 방류('24.06.28~'24.07.16) ● 8차 방류('24.08.07~'24.08.25) ● 9차 방류('24.09.26~'24.10.14) ● 10차 방류('24.10.17~'24.11.04)

[참고자료 2] 해양방사능 조사결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구분	항 목	단위	'23년 측정결과	비교 자료		
				'06~'10 (사고전, 원안위)	'15~'22년 (해양수산부)	'11~'22년 (원안위)
해수	¹³⁷ Cs (세슘137)	Bq/kg	<0.00068~ 0.00243	<0.00119~ 0.00404	0.00054~ 0.00363	0.000892~ 0.00277
	¹³⁴ Cs (세슘134)	Bq/kg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³ H (삼중수소)	Bq/L	<0.051~11.297	<0.038~ <0.743	<0.079~ <3.53	<0.0577~ 0.458
	전베타	Bq/L	7.8~14.0	—	1.59~13.63	—
	⁹⁰ Sr (스트론튬90)	Bq/kg	<0.000487~ 0.001576	<0.000266~ 0.00205	<0.00481~ 0.001663	0.000227~ 0.00184
	²³⁹⁺²⁴⁰ Pu (플루토늄 239+240)	μBq/kg	1.248~6.36	2.11~18.0	0.93~23.38	1.48~14.6
	²⁴⁰ Pu/ ²³⁹ Pu (플루토늄 동위원소 비)	—	0.173~0.248	0.11~0.29	0.145~0.296	0.168~ 0.276
해저 퇴적물	¹³⁷ Cs (세슘137)	Bq/kg-dry	<0.46~3.12	<0.502~5.78	<0.43~<9.2	<0.428~4.71
	¹³⁴ Cs (세슘134)	Bq/kg-dry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²³⁹⁺²⁴⁰ Pu (플루토늄 239+240)	Bq/kg-dry	0.0153~1.753	0.096~1.20	0.0090~ 2.259	0.0478~ 1.36
	²⁴⁰ Pu/ ²³⁹ Pu (플루토늄 동위원소 비)	—	0.191~0.2577	0.20~0.265	0.139~0.282	0.181~ 0.257
해양 생물 (패류)	¹³⁷ Cs (세슘137)	Bq/ kg-fresh	0.0063~0.1054	0.00808~ 0.107	<0.0081~<0.15 7	<0.0111~ <0.128
	¹³⁴ Cs (세슘134)	Bq/ kg-fresh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참고자료 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및 대응 사업 예결산 현황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및 대응 사업 예결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023		2024		2025	사업성격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잠정치)	예산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해양환경 감시체계구축·운영(1033-320)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	국내 연안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5,890	11,787	10,389	10,181	8,962	계속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 예측기술개발(R&D)(4132-316)		해양방사능 오염 예측·탐지 태도국 방사능 관측 및 국제공동연구	2,775	2,775	6,100	6,100	7,500	완료('28)
		해양관광육성(2034-310)	해수욕장 활성화지원(방사능조사)	전국 주요 해수욕장 20개소 대상 방사능 조사 지원	—	125	150	135	150	계속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2031-31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긴급검사)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5개 지역(강원 3, 울릉 2)에 대한 긴급 수질검사 실시	—	255	1,061	977	839	계속
		선박배출 오염예방(6332-303)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추진	600	592	680	672	580	계속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023		2024		2025	사업성격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잠정치)	예산	
농특회계	농특회계	수산물 위생관리 (3041-303)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방사능 장비 확충·지원,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 등	3,305	6,286	16,609	16,747	15,834	계속
		수산물 이력제 (3041-302)	—	생산-판매까지 수산물 안전성 등 이력 관리 추진	2,367	2,276	4,543	3,662	4,185	계속
		수산물 품질관리 (3045-301)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안전성조사, 인증제 운영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9,417	10,048	10,092	8,687	10,093	계속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3044-340)	수산물 소비촉진	어업인 소득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추진	1,448	1,447	1,448	1,423	1,448	계속
			수산물상생할인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 추진	64,000	158,094	133,773	133,444	100,000	계속
		천일염산업육성 (2832-310)	천일염방사능 검사 지원	천일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추진	—	1,126	1,599	1,140	1,599	계속
		환경친화형 양식배합 사료지원 (3140-300)	안전성 강화(방사능검사장비지원)	배합사료의 유해물질, 사료품질 및 방사능 검사 등	—	—	300	—	—	완료 (’24)
	수발기금	수산물 수매지원(융자)(3066-300)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 저장·가공 업체 대상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115,370	83,329	115,370	86,953	152,743	계속
		비촉사업 (3066-302)	—	수산물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주 생산시기 수산물 수매	175,000	127,983	206,500	135,000	175,100	계속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023		2024		2025	사업성격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잠정치)	예산	
		재해등대응 긴급경영 안정자금(융자) (3465-303)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20,000	20,000	100,000	18,999	80,000	계속
		수산금융자금이차보 전(3450-301)	—	어업인의 경영비 조달부담을 완 화하고 어업활동을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 저리로 공급	123,813	83,324	123,332	70,001	112,798	계속
	소 계				523,985	509,447	731,946	494,121	671,831	
원자력안전 위원회	일반 회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연구운영비 지원 (2031-401)	기관고유사업비(해 양 방사능 조사 및 평가)	해양 방사능 분석	1,390	1,390	3,074	3,074	1,495	계속
			장비·시스템 구축 비	해양 방사능 분석 장비 도입	622	622	800	800	287	계속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시설 지원(R&D)	시설비	해양방사능 분석을 위한 실험실 구축	600	600	590	590	—	완료
	소 계				2,612	2,612	4,464	4,464	1,78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일반 회계	방사능안전관리 강화 (1515-303)	방사능 검사 장비 및 실험실 확충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 정에 따라 수입 및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 신속처리 및 철저 한 검사를 위한 장비 도입	1,500	1,477	1,620	1,590	—	계속
	소 계				1,500	1,477	1,620	1,590	—	
합계					528,097	513,536	738,030	500,175	673,613	

자료: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취합